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 제출 및 실효 공고

도레이케미칼 주식회사(“당사”)는 상법 제360조의 9에 따라 2017년 12월 29일 개최된 당사의 이사회에서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주식교환계약서 체결을 승인하여, 당사는 완전자회사가 되고,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는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권을 아래와 같이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권제출 사항

(1) 주권제출장소

- 1) 명부주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2) 실질주주 :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됨

(2) 주권제출기간: 2018년 1월 19일~2018년 2월 23일

2. 주권의 무효: 주식교환일(2018년 2월 26일)에 도레이케미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권은 무효가 됩니다.

2018년 1월 18일

도레이케미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36층
대표이사 이 영 관
이쥬인 히데키
임 희 석